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정복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26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5.

발 의 자:문정복・김준혁・강선우

박상혁 • 민형배 • 박홍배

박균택 · 김문수 · 김한규

한창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은 급여에 관하여 「공무원연금법」을 준용하고 있음. 이에 따라 "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"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발생하여 퇴직하는 교직원의 경우,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됨.

그러나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사립학교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"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" 등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 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. 아울러 30, 40대의 이른 나이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타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"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" 등에 따른 퇴직연금은 퇴직 한때부터 3년간 지급하고, 그 이후부터 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(65세)

전까지 지급을 정지하여 연금재정 건전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(안 제42조 등).

법률 제 호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공무원연금법」제43조제1항제4호의 퇴직연금(이하 이 항에서는 "퇴직연금"이라 한다)은 퇴직한 즉시 지급하고, 수급권 발생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「공무원연금법」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(제4호를 제외한다)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. 다만,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제33조의4의 구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퇴직연금에서 그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.
- ①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공무원연금법」제43조제2항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.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

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2호부터 제4호까지"를 "제2호 및 제3호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제6항 및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되는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42조(「공무원연금법」	및 및	제42조(「공무원연금법」 및
[~ [공무원 재해보상법] 의	춘	
	匸	, , , , , , ,
용) ① ~ ⑤ (생 략)		용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	<u>⑥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공</u>
		무원연금법」제43조제1항제4호
		의 퇴직연금(이하 이 항에서는
		"퇴직연금"이라 한다)은 퇴직한
		즉시 지급하고, 수급권 발생 후
		3년이 경과한 날부터 「공무원
		연금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
		제5호(제4호를 제외한다) 중 어
		느 하나에 해당할 때까지 지급
		을 정지한다. 다만, 퇴직연금을
		반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제
		33조의4의 구직지원금을 지급
		하였을 때에는 퇴직연금에서
		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
		<u>다.</u>
<u><신 설></u>		⑦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
		「공무원연금법」제43조제2항
		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4호
		에 따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
		적용하지 않는다.

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(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 제7조(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 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) ① (생략)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교직원이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중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6 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(이하 이 항에서 "퇴직사유"라 한다)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 달한 때부터 지급한다. 다만.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 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 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 다.

1. ~ 6. (생략)

③ • ④ (생 략)

검포 제15501오 가입역파파적전		
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		
제7조(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		
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		
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		
2		
<u>제2호 및 제3호</u>		
<u>.</u>		
•		
4 (-1-1) 1 1 4 (
1. ~ 6. (현행과 같음)		
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